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. 11. 23 선고 2021가단7465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0. 5.

판 결 선 고 2021. 11. 23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함) 중 2/13 지분에 관하여, 피고와 C 사이의 2020. 5. 13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와 2020. 5. 13. 접수 제205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등기'라고 함)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,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,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([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다41589 판결](#)참조).

살피건대, 을 제1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따르면,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이 사건 등기의 등기원인이 ‘1996. 5. 11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’으로 기재된 사실, 피고는 1998. 8. 5.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인 순천시 D 대 248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함)에 관하여 1996. 5. 11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각 인정된다.

위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,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토지와 일체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대상이었고,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는 늦어도 1998. 8. 5.경 있었으며, 단지 이 사건 등기가 2020. 5. 13.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(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부동산을 분리하여 분할협의를 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음).

이 사건 소는 1998. 8. 5.경부터 5년이 지난 2021. 4. 12. 제기되었으므로, [민법 제406조 제2항](#)이 정한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.

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.

판사 김동욱

[별지](#)